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2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우수 인증 농장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 면 제 근거 신설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우수 인증 농장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 면제 근거 신설(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장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사후조사하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사후관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
- 1)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으로,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 외에도 HACCP,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 점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인 및 차량의 잦은 농장 출입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성실하게 인증기준을 준수한 인증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방향으로 사료됨.

유사한 입법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²⁾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³⁾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상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후조사 면제 또는 완화 사례 】

인증제도	세부내용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사·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 면제 가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95%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 면제 가능

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한육우·젓소·염소·오리 등 7개 축종으로 확대된 이후 인증농장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후조사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및 인력 부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장 수 】

단위: 개소

구분	산란계	육계	양돈	젓소	한우	합계
2025년	280	148	28	26	19	501
2024년	253	162	28	30	12	485
2023년	241	153	22	29	6	451
2022년	223	145	18	31	6	4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인증농장 전체를 매년 방문하는 현행 전수조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증기관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사후조사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바, 우수 농장에 대한 사후조사 면제를 통해 제한된 방역 자원을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농장에 배분하는 것이 제도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먼저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5.6%에 달하고,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2.6%에 달하는바, 상당수의 국민이 해당 인증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조사가 면제될 경우 인증 이후 실제 사육 환경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언론 보도⁴⁾를 통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사육밀도를 크게 늘려도 동일한 인증을 유지하는 사례, 사육두수 확대를 위한 불법 증축을 감행한 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이 아닌 설비 수준 위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도 인증의 실질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인증 신뢰도를 추가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우수농장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후조사 면제가 행정 부담 회피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수농장에 대해서 행정적 편의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복지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우수농장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털 빠지고 부대껴도 ‘동물복지’ 달걀..”그래도 찾아요” MBC 뉴스, 2026.02.11.
”동물복지 2번 달걀의 배신?...산란계 개방형 케이지 사육 논란“ 뉴스1. 2024.06.12.
“의문의 공장형 동물복지 인증’.. 대기업과 관련 있나?”, 전주MBC, 2024.05.19.

아울러 사후조사가 면제되는 우수농장에 대해서도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감독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후조사 면제가 인증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물 복지축산농장의 수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점검 비용 절감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힘.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6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425